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5호
2009년 1월 6일 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6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6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6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 일원)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1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8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9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1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0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6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20호선, 사업명: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75번지 일원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0호선)
 - 【명칭】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93m, B = 8m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07. 8월 ~ 2008. 12. 20 【변경】 2007. 8월 ~ 200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6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53호선, 사업명: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3호선)
 【명칭】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525m, B = 2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07. 1월 ~ 2008. 12. 31 【변경】 2007. 1월 ~ 200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 6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 일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백석지구 소로3류1호선 일원, 사업명:백석지구 소 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일부 공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1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도로(백석지구 소로3류1호선, 소로3류4호선)

【명칭】 백석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20m, B = 6m 및 L = 90m, B = 4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07. 6월 ~ 2008. 12. 31 【변경】 2007. 6월 ~ 2009.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1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초지대교-인천간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초지대교-인천간도로건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사업시행지 : 김포시계(검단천) ~금곡동 ~백석동 ~경서동,
4. 사업개요 : L=8.59km(기존도로활용 : 2.49km) B=20 ~27m
5. 열람기간 : 2009. 01. 01.~2008. 01. 15.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7)
7.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붙임 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단가 책정 (토지)

사업명 :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부	현실적인 이용 상황	지적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00						
1	오류동	122-74	도	도	23	23	4/54	김종식	대전시 서구 탄방동 55-8	대전서구청	대전시 서구청 교통관리과	임류
										한국자산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임류
										한국자산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임류
2	왕길도	480-1	도	도	23	23		박순양	오류동			
3	왕길동	420-3	도	도	105	105.0		김은련	인천시 서구 왕길동 393			
								김은련	인천시 서구 왕길동 393			

보상단가 책정 (영업권)

사업명 : 초지대교~인처간 도로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업종)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계											
1	황길동	473	콘테이너(숙소용)	3*6	1동	문경희	인천 서구 미진동 686-84 장미(아)106-109					
			콘테이너(숙소용)	3*7	1동							
			콘테이너(숙소용)	4*7	1동							
			콘테이너(식당용)	3*6	1동							
			콘테이너(창고용)	3*6	1동							
			콘테이너(사무실용)	4*10	1동							
			콘테이너(사무실용)	3*9	1동							
			컴퓨터		10대							
			에어컨		1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임종)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온풍기		1대							
			냉장고		1대							
			대형냉장고	150cm*200cm	1대							
			TV		1대							
			책상소파		10개							
			정수기외		50개							
2	왕길동	420-12	광중계기	광B	1식	김신배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1(SK텔레콤)					
			광중계기	ERRUP	1식							
			안테나	AB/WCPWA	1조							
			금전서		1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8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281,169	281,085	84	23,431(1/12)	

- ※ 내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
는 자는 제외)
- ※ 외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
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

200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9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9세이상의 주민수 ①	19세이상의 주민중 선거권이 없는자 ②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① - ②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287,347명	1,020명	286,327명	7,158명 (1/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0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계	286,411	286,327	84	42,962		
검암경서동	17,133	17,128	5		2,570	
연희동	34,927	34,917	10		2,864	
가정1동	12,910	12,905	5		1,937	
가정2동	10,652	10,651	1		1,598	
가정3동	9,709	9,706	3		1,456	
신현원창동	14,479	14,478	1		2,172	
석남1동	19,750	19,738	12		2,864	
석남2동	14,227	14,226	1		2,134	
석남3동	14,159	14,156	3		2,124	
가좌1동	11,693	11,683	10		1,754	
가좌2동	17,918	17,918	0		2,688	
가좌3동	16,922	16,917	5		2,538	
가좌4동	10,180	10,177	3		1,527	
검단1동	28,567	28,552	15		2,864	
검단2동	16,004	16,000	4		2,401	
검단3동	13,825	13,825	0		2,074	
검단4동	23,356	23,350	6		2,864	

※ 산정된 서명인 수 42,962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6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계	81,752	81,727	25	16,350	
		검단1동	28,567	28,552	15		818
		검단2동	16,004	16,000	4		818
		검단3동	13,825	13,825	0		818
		검단4동	23,356	23,350	6		818
	나선거구	계	52,060	52,045	15	10,412	
		검암경서동	17,133	17,128	5		521
		연희동	34,927	34,917	10		521
	다선거구	계	33,271	33,262	9	6,654	
		가정1동	12,910	12,905	5		333
		가정2동	10,652	10,651	1		333
		가정3동	9,709	9,706	3		333
	라선거구	계	62,615	62,598	17	12,523	
		신현원창동	14,479	14,478	1		626
		석남1동	19,750	19,738	12		626
		석남2동	14,227	14,226	1		626
		석남3동	14,159	14,156	3		626
	마선거구	계	56,713	56,695	18	11,343	
		가좌1동	11,693	11,683	10		567
		가좌2동	17,918	17,918	0		567
		가좌3동	16,922	16,917	5		567
		가좌4동	10,180	10,177	3		567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사 유

2008.7.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므로 옥외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0조, 제33조, 별표 2)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준비율 조정 (안 제17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2조의2)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4조 별표 5)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82) 및 FAX(560-48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홈페이지·구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제한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9조 중 “법 제10조제3항” 을 “법 제10조제6항” 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08.12.22)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별·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 2. 그 밖에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벽면의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를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가. 일반 옥외광고물의 광고물의 종류란 중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p> <p>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p> <p>3. 표시위치 또는 장소</p> <p>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시권내 미관유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하며,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p> <p>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생략)</p> <p>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p>	<p>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홈페이지·구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제한 내용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②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제1항----- ----- ----- ----- ----- ----- -----.</p> <p>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현행과 같음)</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③(생략)</p>	<p>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2. 공공목적에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 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홍보 내용은 광역시장의, 구정홍보내용은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p>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별 제 10조제6항-----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②(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p>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①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 광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광고물은 법시행일('08.12.22)부터 6월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별·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시행일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p> <p>2. 기타 전지역</p> <p>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벽면의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p> <p>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수수료)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④(생략)</p>	<p>제33조(수수료)①(현행과 같음) ②-----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 ----- ③~ ④(현행과 같음)</p>
<p>제38조(우수광고상) ①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①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구 지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구 지 역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 ~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 ~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 ~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3.8 ~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 ~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 ~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 ~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 ~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 ~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 ~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 ~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3.8 ~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 ~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 ~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 ~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 ~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 ~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 ~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구 지 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 ~3.7제곱미터 이하 - 3.8 ~4.4제곱미터 이하 - 4.5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 ~6.0제곱미터 이하 - 6.1 ~8.0제곱미터 이하 - 8.1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 ~10장이하 - 11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10장이하 - 11 ~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 ~10장이하 - 11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10장이하 - 11 ~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구지역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서식)〈신설〉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2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09’ 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01 또는 200001’ 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